인양작업 및 고소의 조립작업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, 작업지휘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.

- (가) 수립된 작업계획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이를 지휘하는 일
- (나)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상태를 감시하는 일
- (다)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감시하는 일
- (라) 재료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
- (마)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일



<그림 9> 플랜트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

(5) 장비의 이송 및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 인양장비 등의 건설기계와 관련된 작업안전은 KOSHA GUIDE C-48-2012(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제6장 양중기)에 따른다.